

## 제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1. 일 시:1955(4288)년 5월 7일

2. 장 소:의회 의사당

3. 회의성립:

1. 참석의원:13명

朴贊圭, 吳世一, 明南喆, 金子洪, 林一男, 孫白洙, 金昌賢, 金南鎭,  
陳福春, 李在洪, 金三星, 鄭應杓, 金永完

2. 불참의원:8명

李小圭, 李福柱, 金京炫, 金八用, 李文吉, 金慶禧, 李在洪, 文宅鎬,  
金吉煥

4. 출석한 공무원

市長 및 각 課長, 목포시 敎育監

5. 개회선언

議長(오전 10시 40분)

6. 보고사항:

1. 제36회 회의록 낭독

2. 정병조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사건 경과 보고

3. 준설선 및 상업은행 건의문 발송 보고

4. 목포수성사(노인당) 부터의 진정서 보고

5. 文福萬으로부터의 진정서 보고

※ 오전 11시 15분 金永完의원 참석

※ 오전 11시 25분 鄭應杓의원 참석

7. 토의 사항

◇孫白洙의원

- 文福萬 대지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소개 시의원을 조사위원으로 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

◇金昌賢의원

-孫白洙 의원의 동의에 재청

◇李在洪의원

-소개위원을 조사위원으로 하면 편파적인 감이 있으니 행정부나 진정인증을 냉정히 검토할 수 있는 3명 위원 지명을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개의 (재청)

◇議長

-개의집 표결수

가 9표, 가결

◇議長

-위원은 吳世一, 金南鎭, 明南喆 각 의원을 지명

◇林一男의원

-수성사(노인당)에 대하여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

◇陳福春의원

-본 건에 대하여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보니 예산면에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 주더라도 본 진정서는 각하할 것을 개의

◇金南鎭의원

-본 건 예산기가 박두하여 오니 시장님이 선처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신년도 예산 문제가 나오면 협조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할 것을 재개의

◇鄭應杓의원

-본 건 불원간 예산 심의를 할 기회가 있으니 그 당시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해서 통과 하도록 하면 되니 동의집서 수락 한다면 동의 참가

◇林一男의원

-참가 수락

◇議長

-동의집 표결  
가 10표, 가결

※ 특별 부과금에 대해서 각 의원과 교육감간의 질의 응답이 있었음  
(속기록 참조)

◇金三星의원

-특별 부과금 독촉장 발부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

◇明南喆의원

- 본 건에 있어서 행정부에 일임된 문제니 이것으로 종결하고 부의안건에 들어갈 것을 개의  
(재청)

◇議長

-개의집 표결  
가 8표, 가결

◇金子洪의원

- 시정감사를 내 15일부터 실시할 것을 동의

※ 사무감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1954(4287)년도 결산서를 참조하면서 사무감사하여야 하겠으므로 6월말경에 시행하는 것이 적의하다는 李在洪의 원으로 부터의 발언이 있은후 金子洪의원 동의를 철회하였음

※ 吳世一의원으로부터 금반 징병관으로부터 당시 병사사무 주무자가 구 타당한 경로 설명 요구가 있어 호병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음

※ 본 건 논의를 요한다면 비밀회의에 들어가자는 議長의 발언에 전원찬동

◇대여미 불공평 배급 사실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 하되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지명은 議長에게 일임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3청, 4청, 5청)

◇議長

-표결 하겠음  
전원 찬동 가결  
鄭應杓, 金南鎭, 金三星, 金子洪, 孫白洙의원을 지명

8. 휴회선언-議長 (오후 1시 35분)

9. 속회선언-議長 (오후 2시)

◇金永完의원

-치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의장 명의로 보낸 것을 동의

◇吳世一의원

-본 건 지사, 국장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이 감사장을 낼 것을 동의에 참가

◇議長

-표결 하겠음  
전원 찬동 가결

10. 부의안건:

1) 동정운영에 관한 건

(가) 죽교 4동 동사무소 이축에 수반하여 반장 소집을 金子洪의원이 4구반장 金聲浩氏에게 요청 하였던바 불응하여 심지어는 밀회라 하여 경찰서에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음

◇陳福春의원

-본 건에 있어서 그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시의원 두분과 시정계장이 조사 위원으로 된 것을 동의

◇金三星의원

-죽교4구동장, 호남동장 문제에 대하여 진상조사 위원회를 내무분과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처리를 일임하되 그 결과에 있어서 행정부에 건의하고 다음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의

◇金南鎭의원

-본 건 여사한 동장은 도저히 손을 잡고 일을 해 나갈 수 없으므로 파면할 것을 건의하도록 재개의

◇金三星의원

-내무분과 위원으로 하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의장과 합하여 5명으로 구성할 것을 개의에 수정

◇陳福春의원

-동의를 철회함

◇議長

-동의집 철회로 인하여 개의집이 동의로 됨 표결 하겠음  
가 9표, 가결

※ 본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비밀회의로 들어갈 것을 긴급동의  
(재청, 3청)

◇議長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吳世一, 明南喆의원을 지명

11. 폐 회 식- 식순 생략

12. 폐회선언-議長

(오후 3시 1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1955년(4288)년 5월 10일

議長:朴 贊 圭

議員:吳 世 一

” :明 南 喆

作成者 書記:洪 南 植

## 제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속기록

(오 전)

◇議長

-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37회 의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와 같이 힘껏 참가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명 참석으로 개의 하겠습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書記

-제36회 회의록 낭독

◇議長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의가 없으신 모양 같습니다.  
통과 합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書記

- 대정병조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사건 경과 보고가 있었음

◇議長

- 또 그리고 金聲浩氏가 지금 어제 광주를 경유하여 도착해 가지고 계심으로 또 시장님께서 구두로 부탁 말씀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書記

-준설선, 상업은행 유치에 관한 건의문 발송 보고와 건의문 요지 낭독이 있었음

◇議長

- 다음 것은 수성사에 사옥을 좀 수리해 주십사 하는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6.25 사변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후 그 사옥을 노인들의 호랑에서 나온 돈으로서는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수성사를 어떻게 수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진정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은 그 내용을 본다면 사옥 수리비의 보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머시냐 성질로 봐서는 시예산에 넣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은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께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가능 한다면 그 예산 가운데 어떻게 편성될 것을 조정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書記

-진정요지 낭독이 있었음

◇議長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얼마전에 노인 두 분이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와서 가능한 처지 같으면 30만환이라는 것 정도 회사하여 주었으면 하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하면서 30만환 정도가 다 못될 것 같으면 수리비의 일부라도 어떻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직접, 간접으로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잘 검토해서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좀 어떻게 보조하여 달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陳福春의원

-이 수성사는 재단법인 입니까?

사단법인 입니까?

그것이 또 개인의 임의로 조직된 구성체가 아닙니까?

◇議長

-아마 이 내용을 본다면 과거 몇몇 분이 ----- 좋은 생각을 가지고 노인을



존경하는 성스러운 심정하에서 만든 것인데 수성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업이던지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후 많은 노인들이 회원이 되어 이 집을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회비를 거출하여 왔었는데 그 동안에 다 돌아 가시고 지금 두분 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노인들이 모여서 놀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노인들이 여기에 들려서 쉬어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두 분의 노인들을 주로 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이 회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여 온다는데 이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회비라는 것을 몇백환씩 거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도저히 사옥의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와 같은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 ◇陳福春의원

-의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미풍양속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노인당이 목포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진정서의 내용을 들어 보니 대표자가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역시 설립한 노인 두분이 생존해 계시고 회원이 있는 만큼 이것은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예산면에 20만환이나 10만환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기부형식 밖에 않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 이 수성사 보다도 우리 목포시에 하나밖에 없는 유선각도 수리를 못해가지고 좋은 경기에 가서 웃음을 웃어보지 못하고 진흙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비가 세고 하는 형편인데 돈이 있다면 목포를 위하여 할 일이 무진장 있습니다.

市長님도 아시다싶이 시 재정이 이와 같이 고갈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재산에 매우 곤란한데 이것을 개인 단체로써 구성되어 가지고 대표가 회원이 있는 만큼 그런 애로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각 기관을 방문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정도로 하면 그런 수성사는 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李在洪의원

-제가 수성사의 소개 위원으로써 아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당이 당초에는 180여명으로 조직되어 지내오던 중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93명이 돌아 가셨고 지금 90 몇 명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입회금 이라고 하여 몇백환씩을 받고 있고 또 이 사옥이 6.25사변의 파편을 맞아 피해가 막심한데 이 곤란한 노인들의 회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저 진정서가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두분에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것은 시의회에서 결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신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수성사에 대해서 참작하여 주십시오. 하는 진정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말씀 들여서 시장님이 항시 염두에 두었다가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좀 협조하여 주십시오. 하여야 할 것입니다.

◇議長

-이것은 진정서로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대강 말씀 하였으니까 신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어떻게 노인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도와줄 것에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金三星의원

-이 회의를 질서 정연하게 진행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으로 들어 갔으니까 보고사항이 끝난 후 기타 사항에서 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보고 사항을 가지고 주고 받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議長

-이것은 이 정도 진정의 요지만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문복만氏로부터 들어 온 진정서 낭독하여 주십시오.

◇書記

-진정서 낭독이 있었음

◇議長

-지금 진정서는 본인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는 것인데 이 본 건은 행정부에 회부하니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 金永完의원 입장

◇林一男의원

-이 민원서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오므로 해서 행정부에 이관할 것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본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성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논의하여 행정부에 넘기든지 또는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도 짓지 않고 넘긴다면 이것은 통과할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회에서 논의 하여야 만이 올바른 심의가 될 것이며, 시의회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 같으면 해결 하여야 하고 타치하여야 할 문제가 되면 타치하고 또한 각하를 할 것 같으면 각하를 하여야 할 진정서입니다.

그런데 본 회의에서 한번 정도 낭독하고 그대로 행정부에 넘긴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 합니다.

◇議長

- 그렇습니다.

논의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나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귀속재산인 관계상 특별 관청이 있어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林一男의원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계할 수 없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각하를 한다던지 또는 어떻게 한다던지 해야지 그대

로 수성사 문제와 같이 그져 행정부에 넘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와 같은 민원서를 낭독 정도로써 행정부에 넘긴다면 행정부에서 이것을  
결정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썽된 일인 만큼 그런 진정서 처리  
방법을 논의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李在洪의원

-이 노인당 문제는 예산 관계이므로 잘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집행하는 시청에서 먼저 이 예산을 내놓은 것을 우리가 토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도 논의하고 노인당 사육  
수리비를 이번 신년도 예산에 짤 때 넣어 줄 것을 시장에게 부탁하여야지  
우리가 먼저 결정해서 시청 예산에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며, 또한 위법입니다.

또 하나는 수성사 문제와 文福萬氏 문제는 판이합니다.

文福萬氏 문제는 이것을 냉정한 입장에서 검토한다면 우선 시청에다가 늘  
말을 하여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에까지 진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에다가 아무리 호소를 하여도 안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서는 이 사람의 진정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시청에서는  
사실인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여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다가 말을 하여도 안되기 때문에 시의회에다가 진정서를 내  
서 의원 여러분이 선처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당 문제는 이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참고 말씀 드립니다.

◇林一男의원

- 방금 수성사 문제는 예산 문제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  
으로 보아서 예산 문제라고 해서 논의하지도 않고 낭독만으로써 그대로 통  
과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  
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진정서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진정서가 본 의회에서 낭독함으로써 통과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잘 검토하여 행정부에 넘겨야 할 일이지 이대로 행정부에 넘긴다면 행정부에서도 처리하기에 곤란하며, 넘긴 의회 자체가 모순입니다.

※ 鄭應杓의원 입장

◇金永完의원

- 文福萬氏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부에 3, 4차 타합한 모양입니다.

그래 3, 4차의 타합은 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행정부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그 서류를 의회에다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무조건으로 행정부에 넘겨서는 않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에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文福萬氏건은 3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文福萬氏를 상면하고 대지에 대한 상세한 말을 듣고 그 당시 시청 주무자로 있는 李敏洪氏를 만나서 행정부로서 해결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 수성사 문제는 예산 문제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는 결정할 수 없으며, 연도말인 6월말이 곧 닥쳐오니까 행정부에서도 어디까지나 복잡할 것이오니 이 다음 신년도 예산을 짜는데 행정부에서 낼 수 있으면 내게 이것이 뚜렷한 명목을 부쳐서 지출하기는 곤란하니 이러한 안건은 차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 저의 의견입니다.

◇孫白洙의원

- 文福萬氏 건에 대해서는 李在洪의원과 金永完의원께서 세밀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이 진정서는 소개 의원이 있으므로써 의회에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서 소개 의원을 조사위원을 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陳福春의원

-文福萬氏건은 행정부에 넘긴됐자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물론 임대차 계약의 공고에 의해서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실은 생각한다면 의회에다가 진정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역시 또한 여기서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金昌賢의원

-文福萬氏 건은 어디까지나 李在洪의원의 말씀과 같이 개인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본 의회에 호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넘긴다면 그것이 그대로 묵살될 것인지 어떤 시일을 두고 집행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분의 대변자임으로 진부를 규명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손백수의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李在洪의원

- 손의원의 동의에 개의합니다. 조사위원 3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소개의원 3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진정인에 대한 편파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3명 위원을 지명 하는데 행정부나 진정인측을 냉정히 검토할 수 있는 3명 위원을 議長에게 일임할 것을 개의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개의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에도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의집은 소개 의원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 진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議長이 세 분을 다른 분으로서 지명할 것을 개의 하였고 동의는 소개위원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고 동의입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표결 하겠습니다.

가타고 생각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9표로 가결

아홉분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분을 갔다가서 지명 하겠습니다.

金南鎭의원, 明南喆의원, 吳世一의원 세분 수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수성사 문제올시다.

수성사 문제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약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하여 주십시오. 하는 서글픈 진정서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책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면 시장님이 협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해 가지고서 종결을 보기로 하시지요.

◇林一男의원

-결국 민원 서류를 접수 하였는데 보류, 각하, 통과된 것인지 막연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물론 예산에 결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잘 검토하고 또 심의하여 예산에 관한 것 같으면 시장에게 이관하고 우리 의회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해결 하여야만이 시민들이 우리를 신망할 것이며, 그러므로서 우리의 맡은바 의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 진정서는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넘겨서 문교사회분과 위원회로 하여금 실정을 잘 파악해서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장내 소란

◇議長

-이것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실은 예산 문제임으로 이 정도에서 행정부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林一男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결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결부 되었다고 해서 행정부에 이대로 이관 하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아서 예산에 관계된 안건은 의회에 나올 필요가 무엇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 하다면 본 의회로써 행정부에 대해서 건의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진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議長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해서 행정부에 넘기자는 것인데 그러면 보류도 않고 각하인지 통과인지 알 수 없으며, 議長 혼자서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李在洪의원

- 지금 林一男의원의 말씀 어디까지나 노인당을 협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노인당 진정서 소개 의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말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은 아까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 하자고 말하였는데 행정부에 넘긴 것도 하나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바로 넘기자는 것도 하나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수성사 문제를 앞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내용을 잘 검토하여 본 회의에 회부한다면 본 회의에서 결정 된다면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넣어 주도록 건의하자는 동의를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수성사에 협조해 준다는 안이 나온다면 본 회의에 돌려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부탁 합니다.

하는 건의를 하는 정도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陳福春의원



- 李의원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수성사는 예산면에 넣어 가지고 도저히 수리할 수 없으며, 유선각 수리비로 해서 유선각 수리비 10만원이면 15만원으로 봐 가지고 수성사에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한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은 본 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고 역시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없고 하니 이 진정서는 각하하고 예산면에 넣어 주었으면 넣어 주더라도 각하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하고 부른이 있음)

◇金南鎭의원

- 林一男의원께서 수성사를 도운다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결부나 집행부에서나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예산기가 박두해 오니 市長님이 선처해 주기를 부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신년도 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협조한다는 예언을 나누고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鄭應杓의원

- 마침 수성사에서 그런 진정서가 들어 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논의 됩니다 만은 사실 사회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목포시내 모든 사회사업 정도를 본다면 목포에서 응당 도와주어야 할 사업체가 수성사가 아니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의 예산을 본다면 사회사업에 보조는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도 예산이 각 분과 위원회에 늦어도 세달(來月)에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때는 각 분과 위원회가 소속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때 수성사 문제가 나온다면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토의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林의원이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용을 검토할 결과 본 회의에 보고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월에도 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 한다면 문교사회분과 위원

회에서 검토하여 통과 하도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사 문제는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일임할 것이라는 동의를 수정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만일 받아 들인다면 그렇게 첨가 하겠습니다.

◇林一男의원

-받아 들이겠습니다.

※ 장내 소란

◇李在洪의원

- 陳의원께서는 지금 이 진정서를 각하 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2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진정서를 내놓고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하하여 항목에 안 드니 어찌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노인들은 대개가 가정이 빈해서 여기서 나와서 놀고 돈 있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놀고 있는 이 때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필요 합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선각하고 중앙국민학교고 다 필요 없고 수도 문제가 제일 필요합니다.

중앙국민학교도 필요하지 않고 다 필요 없습니다.

노인당에 돈 2, 30만원 보조하여 준다고 해서 무슨 할 일을 못합니까?

◇陳福春의원

- 李在洪의원이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한 모양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하여 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풍양속을 살리자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장내 소란

◇鄭應杓의원

-방금 陳의원의 말씀이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정사 문제는 예산에 넣을 수 없다고 혼자서 단언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전 의원을 참으로 모욕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성사 문제로 목포시 예산에 관계한 것은 하등의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전 의원이 합의만 된다면 이것을 통과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살아 있습니다.

동의를 토의 종결하자는 말입니다.

◇議長

-동의집 동의 말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林一男의원

-본 회의에서 그대로 통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애매하니 실지로 문교사회 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자는 동의입니다.

(찬성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다음 의견 없으면 그러면 동의에 찬성 있으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10표 가결

市長님 교육세 특별 부과금에 관한 결과 보고 말씀해 주세요.

◇市長

-의원 각위에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반 의회시에 교육세 특별 부과금이 민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니 독촉장 발부를 6월말까지 연기할 것을 市長에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납기가 경과 하였지만 아직도 독촉장 발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교육위원회에서 목포시장에게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 건의서의 중요한 골자는 만약 6월말까지 독촉장 발부를 보류한다면 그동안 징수 성적이 대단히 불리한 까닭에 제 시기에 공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포시장의 부담으로 하면서도 민부담이 더 과중해 지고 공사는 지연되니 독촉장 발부는 이달(本月) 15일까지는 발부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어지게 된다면 아마 물가의 앙등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각위께서 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재고려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教育監

-목포시장에게 징수 위임을 받은 관계로 제가 중간 징수사항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현재까지입니다.

일반 부과금과 특별 부과금을 합해서 징수실적이 9부 약으로 되었습니다.

전례를 본다면 고지서 발부 후 40일이 경과하면 4할 내지 6할이 징수 되는데 금반에는 고지서 발부후 40일이 가까워집니다 만은 9부 약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무액은 반환하여야 할 터인데 징수 부진으로 말미암아 일대 난관에 봉착 되었으며, 6월말까지 납기를 연기하지 않는다면 4, 5월중으로 공사 입찰을 하되 6월말로 한다면 8, 9월에야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며, 5월 15일로 하는 것을 공인하여 준다면 시기를 말할 수 없으나 독촉장 발부 후 순리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 ◇議長

-이 특별 부과금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보고가 있고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토의하여 주십시오.

#### ◇陳福春의원

- 실은 지금의 본 회의도 역시 목포시민의 소리를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 독촉장 발부를 금월 15일까지 하라는 것은 곤란하니 5월 15일로 소급해서 받도록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 ◇金永完의원

- 이 예산을 통과한 것은 한번 법적으로 통과된 이상 다시 말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여 떠들고 있으니까 건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 어느 예산이나 7, 8할까지 징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미수가 약 2할 정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부 후 1개월이 되었는데 겨우 9부 밖에 징수 못하였다는 것은 연도 폐쇄기가 불과 앞으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대로 간다면 연도 폐쇄기까지 1, 2할 밖에 징수 못될 것이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적어도 7할의 미수가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7할의 미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계획한 예산 집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지금 금월 15일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6, 7할이 징수된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까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의회에서 독촉장을 발부하여라 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촉장을 발부 하여서 완전 징수할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민심을 서서히 안전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 ◇議長

- 그 납기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말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5월 15일에 그 독촉장을 발부 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教育監

-의회에서 전원이 협조하여 준다면 특별 부과금까지 독촉장을 발부하여 노력하되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 부과금 만이라도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 하

겠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음

◇議長

-독촉장 발부는 행정부에 일임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金昌賢의원

-교육세 통과 후 오늘날까지 40여일을 보류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시기가 대단히 나쁩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상가들이 한산기입니다.

방금 金永完의원의 말씀과 같이 어디까지나 학교 짓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학교 건축 자재만이 물가가 양등한지는 알 수 없으나 요세 시중 물가를 본다면 대략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독촉장을 발부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문제이니 이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 장내 소란

◇金子洪의원

-시기가 나빠서 시민의 담세력에 비추어 과중 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일전 지나다가 중앙국민학교를 돌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동정 할바 이었습니다.

앞으로 날은 더워지고 천막 밑에서 의자 마저 없어서 돌위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천막 내부를 들어가 본즉 불덩이 같이 더웁고 참으로 나 자신 동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담세력도 담세력이지만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되도록 어디까지나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教育監

-특별 부과금에 한해서는 독촉장을 발부 못하면 일반 부과금 만이라도 독촉장을 발부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채무 확정액을 청산하기 위하여 별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은 8, 9월에라도 공사 입찰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때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대는 그 책임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점 잘 참작해 가지고 행정부에 일임하여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 본 의회에서 중앙국민학교 짓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건축하는데 찬성은 하나 민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니 이것을 좀 서서히 징수하였으면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金永完의원

-교육감께서는 책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만일 6월말을 납기로 해서 학교를 못 짓게 된다면 책임이 우리 시의회에 있다는 거지요. 책임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독촉장을 발부하여 당신의 책임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니라 어제라도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포시의 실정을 본다면 담세력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학교 공사에 지장이 있을 때 책임을 못 지겠다 하면 이것은 책임 전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의견은 독촉장을 발부하여 가지고 자신 있게 중앙국민학교를 지울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金昌賢의원

-지금 독촉장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 서무과장을 절대로 완전 징수 하겠다는 것을 말씀 하였는데 그 책임 못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明南喆의원

- 당초의 특별 부과금은 통과시에 1표 차로 통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된 다음 담세력이 없는 시민들이 시기도 나쁜데다가 너무나 과중하다는 여론이 비등 함으로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실정 그대로 반영한 것은 사실이며, 저희들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회의 때 6월 29일까지 징수는 하나 독촉장은 발부하지 말라는 것을 시장에게 건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5일 아니라 내일 모레라도 독촉장을 발부하여 완전 징수만 하려면 발부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교육감과 시장께서는 5월 15일 이후까지 기일이 연장 된다면 물가 변동으로 말이암아 상당한 경제적인 폐단이 올 것이다 하였는데 교육감께서 그렇게 영웅적으로 물가 변동까지 알고 있었던가?  
그러면 또 우리 시의원은 그만큼한 물가변동도 몰랐던가?  
교육감의 이와같은 발언은 오직 우리 전 시의원 21명을 「햇바지」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 시의원 21명은 과연 내일의 물가 변동 이지 못하였던가?  
또한 교육감께서 그렇게 영웅적으로 물가 변동을 알았다면 왜 일찍 못 하였던가?  
우리 시의원이 책임을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5월 15일까지로 하여 완수하지 못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것 말씀하여 주십시오.

◇教育監

-지금 明의원의 말씀과 같이 시민의 여론을 반영시켜 그런 결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 변동에 관해서 말씀 하였는데 제가 무슨 영웅적으로 무엇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의 통화 증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지 거기에 무슨 타의는 추어도 없습니다.

◇吳世一의원

-제가 중앙국민학교 사친회장 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시민의



한 사람 시의원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의 천막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 그대로를 말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3년간 의회생활에서 무엇하나 해 놓은 일 없으며, 삼학도 문제도 말만 있었지 실천을 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고 해방후 광주같은 도시에서는 60간 이라는 교실을 증축 하였는데 목포는 한 일이 없으니 중앙초등학교나 하나 어떻게 해서 지어 주자는 요지의 말이 있었음

◇李在洪의원

-이 교육세 문제를 가지고 이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내 의견으로는 우리가 6월 29일 이후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여 주십사 하고 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지금 와서는 우리가 5월 15일로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1,200만환을 통과하지만 시민의 여론이 너무 과중하다고 떠들기에 6월 29일까지 하여 달라는 것을 건의 하였는데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또 시기를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9일까지 연기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건의 하였으니 꼭 그렇게 해야 쓸 것 같으면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6월 29일로 하자고 결의할 것을 이제는 또 5우러 15일로 한다고 번안 동의를 할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議長

-우리 의회에서 6월 29일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5월 15일로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까?

※ 발언 주시오.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金三星의원

- 우리 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으로 말미암아 결정 된 것을 시민의 담세력이 없는데다가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놓으니 사업과 한산기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시민의 여론이 과중하다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6월 말까지 받게하여 주십시오 하고 건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하면 공사가 불가능하니 오는 15일까지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징수를 할 수 있다면 6월말 이내에 할려면 하십시오.

그리고 5월 15일이 경과되면 물가고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느 은행에든지 그만큼만 용자를 해 가지고서 공사를 착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한 이 있음)

◇鄭應杓의원

-지난 의회 때 특별 부과금을 6월 29일 이후에 독촉장을 발부할 것을 제안한 저로서 방금 의장이 하신 말씀에 응하지 못하겠기에 저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발언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말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한분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징수를 하기에 곤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본 의원은 지난 의회 때 발언한 사람으로써 5월 15일로 하라고는 다시 말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 세끼고 명색 시의원인데 언젠는 6월 29일로 하라고 했다가 언젠는 5월 15일로 하라는데는 손 못 들겠습니다.

이것을 또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목포시 의원을 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한다면 목포시 의회의 위신은 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는 왜정 때부터 관리로 지내오던 사람들이라 자칫하면 목포시 의원을 쥐고 주무럭 주무럭 할려는 그런 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포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鄭應杓의 입장에서는 朴議長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는 것을 설명하여 줄겁니다.

※ 장내 소란

◇明南喆의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건의 하였으니까 독촉장을 발부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議長

-6월 29일까지 연기 된다면 중앙국민학교 공사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 5월 15일로 독촉장을 발부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되도록 이 문제라는 것을 성사시켜 봅시다.

◇孫白洙의원

-장내 소란으로 전회 36회를 확실히 기억을 할 수는 없겠으나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 하였으니 시민의 담세력이 없기 때문에 징수 기일을 연기 하자고 하였다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5월 15일로 하자는데 대해서 의회측에서 여전히 6월 29일로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암시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明南喆의원

- 6월 29일 후로 독촉장 발부하라고 건의한 것이 절대로 못박혀 있는 것 아니고 하니 이것은 행정부에서 내일 독촉장을 발부 하던지 모래 부터를 하던지 그것은 행정부에 일임된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종결하고 부의안건으로 들어 갈 것을 개의 합니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 그러면 金三星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행정부에 일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金三星의원

-이미 일임된 것인데 예산을 통과한 것이 민에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건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여 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듣고 일임 하자는 것입니다.

◇議長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개의를 찬성하는 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8표 가결

◇金子洪의원

- 신년도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항시 있는 제6차 시정 감사 전반적인 시정감사를 이달 15일부터 실시할 것을 동의 합니다.

(다소의 좌담이 있는 후 25일로 정정 하겠습니다. 하였음. 그리고 또 조금 있다 25일로 합시다. 하였음)

◇議長

-시장님 금월 25일부터 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어떻습니까?

◇市長

-개정예산을 금월 하순경에나 내월 초순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작하여서 날짜를 정하여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李在洪의원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결산기에 자료를 얻기 위하여 6월말경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말씀 드립니다.

◇議長

-결산기를 기본으로 하여 가지고서 사무감사를 하려면 8월 중순경이 될 것 아닙니까?

◇李在洪의원

-오는 15일경에 한다면 6월부터 결산기까지의 사이에는 감사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6월말경에 하면 그 공간에 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議長

-그러면 6월에 들어가서 사무감사는 하기로 하지요.

◇金子洪의원

-그러면 긴급 동의를 철회 하겠습니까.

◇吳世一의원

-시청 병사계장 말씀을 하겠습니까.

말듣기에는 병사계장 많이 맞았다는데 그 마진 동기를 말씀하여 주었으면 하겠습니까.

◇議長

- 그러면 토의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듣기로 합시다.

◇兵事係長

-금년도 징병 검사의 목포시 날짜가 지나간 26일, 27일 양일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 누락자와 당 시 누락자 종합 심사일이 지나간 28, 29일입니다.

마침 29일 최종일인데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침에 나온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늦었더랍니다.

그래서 검사장의 서장 대리석에 50여명의 수검자가 경찰서에서 앓나와서 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과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이 아마 빨리 받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수검표를 가지고 징병관 한테 와서 말을 했다 모양입니다.

강좌 과목이 있으니 빨리 가겠다고 그리하여 결국 상대생 문제를 가지고 \* 계장이 무조건 징병관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관이 화를 내게 되어 구타 하였다는 경로를 말하였음.

진단결과 5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등 이야기가 있었음  
(中略)

◇金永完의원

-시장님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소위 시청계장이 그런 봉변을 당하였는데 시장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市長

-그 경우 전말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해서 전말을 상사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議長

-지극히 딱한 문제입니다.

군부 직원으로서 일반 행정부에까지 개입해서 그런다는 것은 참으로 위법된 처분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좀더 논의 한다면 비밀회의로 들어 갔으면 하겠습니다.

(전원 찬동)

◇鄭應杓의원

- 이번엔 도시 세궁민이 받은 식량과 농촌 세농가 대여미가 각 동에 배급되고 있는데 도시 세궁민 1호당 4되1흡으로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배급은 응당 세궁민에게 배급되어야 할 것은 사실인데 어떤 동에서는 자기의 정치기반을 닦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에서는 상환 양곡대 미수를 받기 위하여 일반 상가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대여미는 세농가에 대여하라는 것인데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농가에 대여한다 하여 가지고 어떤 동에서는 동장 자기의 세력을 부식하

기 위하여 응당 상대자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 하여 주지 않고 대여를 받지 않아도 아무일 없을 사람에게는 2가마니, 3가마니를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이 참으로 세민을 위한 대여미인지 동회장 자신을 위한 대여미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것을 조사해서 이 도시 세국민 배급과 세농가 대여미 배에 대해서 그 진상을 파악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본 의회에서 그 진상조사 위원 5명을 선출해서 조속히 5명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파악해서 본 회의에 보고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그리고 5명 위원은 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 3청, 5청까지 있음)

◇議長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전원 가결

그러면 다섯분을 지명 하겠습니다.

鄭應杓의원, 金南鎭의원, 金三星의원, 金子洪의원, 孫白洙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점심 온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지금 1시 35분이니까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중 식)

(오 후)

◇議長

-속개 하겠습니다.

◇金永完의원

- 시예산으로서 도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물론 시민이 동원 되어서 하겠지만 목포시 도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직 목포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된 것은 사실이니 본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감사장을 보냈으면 라는 것을 동의 합니다.

◇吳世一의원

-물론 서장의 노고가 큼니다.

그러나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지사, 국장까지도 감사장을 보낼 것을 첨가 합니다.

◇議長

-동의안을 복창한 후 가부를 물은 결과

전원 찬동 가결

그러면 부의안건으로 들어 갑니다.

동행정 운영에 관한 안건입니다.

이 부의안건은 제안자가 金子洪의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金子洪의원

-죽교4구동 사무실을 중심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항시 염두에 두고오던 차 금반 시에서 죽교4구동 준설공사를 한다기에 우리 동에서 부역제로 그 공사를 하여 거기에서 나온 이득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할려는 마음을 가지고 반장 회의 개최를 동장에게 요구하였으나 반장 회의의 소집을 불응하기에 자신이 반장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밀회라고 하며 동장이 서 사찰계에 연락하여 남교동 파출소 주임에 의해서 제지 되었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음

◇陳福春의원

-방금 金子洪의원의 말씀 대략 골자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정계장하고 시의원 두분을 선출해 가지고 그 진상 여부를 확실히 하지 못하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진상을 조사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개의안건에 동정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실시하는 동자치제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金子洪의원이 제안자가 되셨군요? 그리고 그의 한가지 부언할 것은 요새 각 동에 출신의원 한사람과 동유지 4명을 포함 동고문제도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



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역시 이력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시장이나 총무과장은 고문이라고 해 가지고 1, 2년 가만 있어도 고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장 혼자 결정짓지 못한 일은 협조하여 주는 것이 고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동정에 협조하고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金子洪의원

- 그 후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계장을 시켜서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 그러면 시정계장으로서 진상 조사한 것을 여기서 듣기로 할까요? 우리 시의원이 진상조사를 할까요?

◇金三星의원

-시정계장의 진상 조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목일에 대서 특서하여 시정에 시의원 간섭이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호남동 동장 문제와 죽교4구동 동장 문제로 되었는데 호남동장은 동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여 투표까지 한 결과 26표가 지지하고 있는데 시장의 무능으로 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김모라는 도의원과 황모라는 도청 직원이 모인을 추천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죽교4구동은 동장이 준설공사를 하려는데 모시의원의 개입으로 암초에 부딪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시의원의 자신으로써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호남동장 문제나 죽교4구동장 문제나 일방적으로 말을 듣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시던지 내무분과 위원으로 하던지 해 가지고서 그 진상 조사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할 것을 개의 합니다.

(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金子洪의원

-죽교4구동장 문제는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듣기로 합시다.

◇市政係長

-진상 조사서에 의해서 보고가 있었음

◇明南喆의원

-金の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동사무소를 위하고 동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려는데 동장 자신이 반장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시의원이 소집하여 놓은 반장 회의 조차 밀회라고 하여 사찰계에 이야기 하였다는 그런 괘씸한 동장이 어디 있겠소.

저 뭇인가 나 조사 위원을 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시의원이 반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위법이고 동장이 반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林一男의원

-시정계장의 조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죽교4구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각 동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며, 이것을 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로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대책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市長

-죽교4구동장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신 어제사 조사서를 보았습니다.

동장으로서 자기동 출신 의원에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노력 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의원이 그 동을 위하여 노력 하는데 비 협조를 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출신 의원이 반장 회의를 소집하는데 동장으로서 부당하면 시장에게 상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서에다가 말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근심 끼치게 하여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조사해 가지고 상당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金子洪의원

-제 출신지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은 우리가 이러한 동장으로서는 도저히 손을 잡고 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金三星의원은 조사 위원을 선정하자고 말하였지만 거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명령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러한 동장은 파면할 것을 건의하도록 동의 합니다.

◇金三星의원

-방금 동의를 수정 하겠습니다.  
내무분과 위원으로만 한다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陳福春의원

-동의 철회 합니다.

◇議長

-동의 철회하였습니까?  
죽교4구동장, 호남동장 문제를 둘러싸고 그러니 저러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동정을 돕기 위하여 진상 조사 위원을 5명을 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吳世一의원

-호남동장 문제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누구를 추천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전말의 말이 있었음

◇金昌賢의원

-호남동장 문제에 대해서 吳世一의원의 발언과 대동소이한 발언을 하였음

※ 내용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기록 불능 하였음

◇議長

-다섯사람 조사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 하신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가 9표 가결

◇金南鎭의원

-시장에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 기 동명동 한복판에 50여 가구가 영해동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한 알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市長

- 그것은 실지 한번 제가 답사 하겠습니다.

◇陳福春의원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수 공사를 하여 양수를 하고 있다는데 시중 배수량이 얼마며 배수하는 도중 누수량이 얼마나 되며 1일 양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4월 26일 준공 되어서 26일 시운전하여 126톤을 올렸습니다.

그 후 매일 지금 현재 750톤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수가 부족해서 1일 3시간 내지 4시간 밖에 일을 못하고 있으며 누수는 오늘 저녁까지에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陳福春의원

-하루에 750톤 올라오면 시민 전체의 한 사람에게 얼마씩 되며, 1일 배수량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하루에 300톤 올라 오는데 달산리에서 300톤, 3, 4수원지에서 130, 양수장에서 750톤 정도로 되어 있으며 아직 1인당 얼마까지는 통계를 내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市長

-양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420톤, 석수로는 22,540석입니다.

즉 이 수자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능력으로는 1일 120톤까지 양수할 수 있으나 현재 그 위에 있는 전답에서 못자리를 위하여 흐르는 물을 막고 있어서 원수가 부족하니 이 시기가 지나면 좀 낮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金子洪의원

-앞으로 날은 더워가는데 전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일대에는(의사당 부근) 지수전을 파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지수전으로 균이 들어가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이 앞에 뿐만 아니라 시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방지 안되면 강권이라도 발동해서 막아야 하겠습니다.

◇市長

-그런 점 발견 하시면 곧 전화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거반에 서장에게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 우리 조장 행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발견된 즉시 전화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吳世一의원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나치고 아까 비밀회의로 들어갈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재청, 3청까지 있음)

◇議長

-오늘 회의를 종결하자는 종결 동의를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짓기로 합니다.

비밀회의로 들어 갑니다.

전원 찬동

## ※ 죽교4구동, 호남동장 문제 진상 조사 위원회 회의록

1. 일 시:1955(4288)년 5월 9일

2. 장 소:副市長室

3. 참석의원:

議長, 金永完, 金八用, 鄭應杓, 各 分科 委員長

◇議長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죽교4구동장, 호남동장 문제를 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金永完의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라서 직접 시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직접 동장과 金子洪의원을 참석시켜 사실 여부를 들어 볼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 찬성)

◇金子洪의원

-제가 그 동장을 추천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동장에 취임후에는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 나가자고 말하였으나 그 후 노상에서 만나도 인사도 없이 지나기에 동직원 김용교와 신정술에게 그런 말을 하여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중 일관격으로 여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2, 3년전부터 반장 회의에 참석하면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각 분과 위원장님들도 아시다싶이 4구동은 변방에 있는 관계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죽교3구동 상류의 준설 공사를 동민을 출역시켜서 하므로써 거기에

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장 회의 소집을 동장에게 요청 하였으나 불응하며 자신이 반장 회의를 소집하여 놓았는데 동장이 밀회니 서사찰계에 말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여 반장 회원도 해산 되었으며, 남교동 파출소 주임이 현장까지 출동하였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음

◇李在洪의원

-그럼 金의원의 요망 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金子洪의원

-지금까지의 예를 보아서 이 사람이 이 버릇은 못 고칠 것 같으니 권고 사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李在洪의원

- 내가 듣기에는 반장 회의 소집을 동장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동장이 공무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 직원에게 반장 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동장과 세 번이나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다시 대두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子洪의원

- 제 자신 동장에게 얼른 말이 않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사 직원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반장 회의 소집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으며, 소위 시의원으로써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동장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전체 시의원에게 위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李在洪의원

-동장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계 직원에게 이야기 한다면 동장도 기분이 나쁠 것 아니요.

◇金子洪의원

-제가 들어가서 안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여도 담배만 피우면서 들은척만척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議長

-우리가 생각할 때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동장이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어  
떻습니까?

금의원은 탈선된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자신 합니까?

◇金子洪의원

-네, 그렇습니다.

동장에게 시의원이 일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으며, 그날  
도 역시 인사를 하여도 인사가 없기 때문에 병사계 직원에게 말한 것입니다.

◇鄭應杓의원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시의원으로써 반장 회의 소집할 수  
있는가?

또 시직원이 동직원이나 동장을 보고 반장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동장이  
응하여야 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알고 조금도 편파성이 없이 이일 해결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점을 연구 하여야 하겠습니까.

◇李在洪의원

-동장 이야기를 듣고 한계를 결정 합시다.

◇議長

-좀 오시란 것은 다름 아니라 무슨 말씀을 물어 보려고 오시라고 하  
였으니 조금도 자기의 입장을 호전시키려 하지 말고 의원과의 반장 회의 소  
집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竹橋4區洞長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장 회의 소집 요청이 있기 전에 준설 공사가 있다고 하기에 제가 副市長  
님에게 그런 사유를 말하였더니 副市長님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며  
즉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을 불러서 이 준설 공사가 기술을 요하는 것인가?  
노동만으로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역시 노동만으로서 된다고 하기에 건설과

로 내려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공사를하기로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27일날 낮에 제가 어디를 가느냐고 막 나오니까 金의원이 거기 올라 오기에 인사를 하고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金의원이 거 병사계 직원에게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반장 회의를 좀 소집해 달라고 하니까 직원 말이 동장님이 계시니 동장하고 상의하여 주십시오.

하나까 담배를 한 대 정도 피우도록 아무말이 없기에 내가 무엇 때문에 반장 회의를 소집할려 합니까?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말하십시오.

하였더니 준설공사를 하여 동사무실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반장 회의를 소집한다고 말하기에 그 문제는 오늘 저녁 반장 회의에 이야기 하여서는 안되요.

왜냐하면 40반 중 17, 8개반이 동사무실 있는 편이고 20, 1개반이 저쪽이니 오늘 저녁 그 이야기를 하다면 17, 8개반에서는 출역을 하지 않을 것이니 공사를 끝마치어서 돈을 책상위에 놓고 반장 회의를 소집하여 다수 가결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金의원 말이 이것 속히 하지 않으면 시에서 이 공사를 법적 입찰 공고를 하신다고 말하면서 동사무소 이전 문제를 내 걸어야 한다고 말씀이 있어서 서로 승각 하다가 갈렸습니다.

반장 회의를 열고 몇몇 반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찰계 형사 주임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더니 직원을 남교동 파출소에 보내 주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제가 金의위집을 방문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전반 의회에서 까지 그 문제가 논의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在洪의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동 고문을 추천하는데 의원을 추천 않은 것은 사실 인지요?

◇洞長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을 넣기 위하여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출신구 의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金永完의원

-그러면 반장 회의가 밀회라고 해두고 직접 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왜 사찰계에 말하였습니까?

◇洞長

-답변이 없었음

◇議長

-그러면 호남동 문제로 들어 갑시다.

그리고 죽교4구동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반장들의 말도 듣고 하여 가지고 결정 합시다.

◇李在洪의원

- 金昌賢의원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 봅시다.

◇金昌賢의원

-제가 보는바는 동장 서리가 있다고 하여 시직원이 나와 있는데 동내 여론이 그렇습니다.

반장들이 기껏 선거 하여 놓으니까 아직 그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林三萬씨에게로부터 보았습니다.

동장을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고 하였더니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호남동으로 이사를 하여도 동장 할려고 이사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이사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鄭應杓의원

-어제 그 관계 서류를 잠깐 보니까 동장을 추천한 사람이 있고 표를 해서 임삼만氏가 당선이 되고 하였는데 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 동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억 되는바 있는데 거만 의회에서 시장은 동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회 서기가 승급할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임명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임명할 때는 투표에 의해서 임명 한다고 말씀 하였는데 이번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總務課長

-그 투표 관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행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날 아침에 시장님이 오늘은 가서 투표를 하는데 누구에도 말을 하지 말고 있다가 오후에 시간이 다 되면 직원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정계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에 시장님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서 반장들을 소집하여 투표를 할려는데 어떤 분이 발언을 주라고 하였으나 전례로 보아서 발언을 주면 곤란하기에 무조건하고 투표를 한 후에 발언을 주기로 하고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난 후 어떤 반장이 발언을 주라고 하기에 발언을 주었더니 이 사람이 동장에 이명될 것인가? 또는 투표를 할 것인가? 하기에 임명권이 없는 나로서는 확답을 할 수 없으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산회 하였습니다.

◇鄭應杓의원

-나는 이러한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은 그 동에 거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죽교3구동 동장에 박종암씨의 예를 본다면 길 하나 사이로 그 사람이 죽교4구동에 거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못한 일이 있습니다.

◇議長

-호남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 문승모씨를 전송하기 위하여 역예를 나갔더니 그 분 말이 허만氏가 동장은 적당하다고 말하면서 만일 허만氏가 임명되지 못한다면 제2자를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鄭應杓의원

-그럴 것 없이 호남동에 林三萬氏하고 죽교3구동에 박종암씨 해 줍시다.

◇議長

-그러면 최후적인 결정은 우리 다섯 사람이 결정 짓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끝입니다.